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66호 2014. 10. 31.(금)

## 고 시

○ 사천시 고시 제2014-159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 고시 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·FAX 831-6011

# 사 천 시 공 보

제366호(2)

## 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4 - 159 호

#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4. 10. 31.

## 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11- 4호
2. 점용·사용 승인년월일 : 2011년 6월 17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 - 해양낚시공원(유어장)시설 진입을 위한 보행교설치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 -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4-9번지선 공유수면
5. 공사완료내역
  - 보행교 설치 [579㎡(L=232, B=2.5㎡)]
6. 공사기간
  - 2012년 1월 13일 ~ 2014년 5월 31일
7. 점용·사용 승인(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인)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 - 성 명 : 사천시장
  -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8.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: 2014. 10. 28.